

「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」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3월 6일, 이창열 의원
- 회부일자: 2025년 4월 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4월 7일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,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며,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(안 제4조)
- 재정 지원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부.

「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안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3. 6.
- 회부일자 : 2025. 4. 1.
- 상정일자 : 2024. 4. 7.

2. 제안이유

-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,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며,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(안 제4조)
- 재정 지원(안 제5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를 규정하고 있고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재활용이 불가능해 매립되거나 소각 시 온실가스, 빌암물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군수의 책무)에서 군수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실행계획 및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함.

- 안 제4조(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)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하여 우선 게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5조(재정 지원)에서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5. 종합검토의견

-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목적은 타당하고, 자치사무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불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 략)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

 가. 지역개발사업

 나. 지방 토목 · 건설사업의 시행

 다. 도시 · 군계획사업의 시행

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 · 군도(郡道) · 구도(區道)의 신설 · 개선 · 보수 및 유지

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 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 사. 자연보호활동

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 자. 상수도 ·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 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 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
 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 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 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 거. 주차장 ·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 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5. ~ 7. (생 략)

□ 환경정책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험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 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,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불임 참고 자료

□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

조례[2024.12.26.] 외 57건 (강원도 내 없음)

□ 폐현수막 현황[2022~2024]

	현수막 생산량(a)	재활용량(b)	폐기량(a-b)
합계	28,804	1,600	27,204
2022	8,346	0	8,346
2023	10,468	1,000	9,468
2024	9,990	600	9,390

* 현수막 생산량: 게시대 신고 현수막 건수 + 불법 현수막 수거 건수

* 재활용은 불법 현수막 수거건에 대해서만 실시중이며, 재활용 외에는 매립 처리

□ 기존 현수막 단가 현황

- 일반 현수막 표준단가 : M당 11,000원(*현수막게시대(6M) 기준 66,000원)
- 친환경 현수막 단가 : M당 16,600원 ~ 18,300원(추정)

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398
----------	-----

발의 연월일: 2025년 3월 6일

발의자: 이창열 의원

찬성자: 남진삼, 김광성, 심현정 의원

1. 제안이유

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,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, 환경을 보전 및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(안 제4조)
- 다. 재정지원 및 교육·홍보(안 제5조~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환경정책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불임참조(비용추계서 첨부)
- 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5. 2. 19. ~ 2025. 2. 27.(9일간), 의견없음

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,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현수막”이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.
- “친환경 소재”란 생분해, 산화생분해,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,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.
- “재활용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-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
-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
-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)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평창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5조(재정 지원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
2.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

제6조(교육 및 홍보)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,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<지방자치법>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략)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
 - 가. 지역개발사업
 - 나. 지방 토목 · 건설사업의 시행
 - 다. 도시 · 군계획사업의 시행
 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 · 군도(郡道) · 구도(區道)의 신설 · 개선 · 보수 및 유지
 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 - 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 - 사. 자연보호활동
 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 - 자. 상수도 ·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 - 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 - 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하. 지방 체육사업의 경영
 - 거. 주차장 ·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 -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<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>

제3조(옥외광고물의 분류) 옥외광고물(이하 “광고물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

1. ~ 6의
2. (생 략)
7. 현수막: 천 · 종이 · 비닐 등에 문자 ·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, 지주, 개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

<폐기물관리법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6. (생 략)
7. “재활용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 - 가. 폐기물을 재사용 ·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·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

<환경정책기본법>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·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- ②. ~ ④. (생 략)

[별지 제1호 서식]

비용추계서 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5조(재정지원)
- 나. 친환경 소재 활용 현수막 사용률 제고를 위한 보조금 등 비용 발생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평창군 현수막 생산량: 약 55,000장(5년 누계 추정치)
- 친환경 소재 제작단가: 80,000원 ~ 110,000원/장(6m × 0.9m 기준)
- 친환경 원단 사용 보조금: 40,000원 × 50% = 20,000원
- 친환경 현수막 제작 기계 보조: 30,000천원 × 50% = 15,000천원

나. 추계 결과: 금1,325,000,000원(일십삼억이천오백만원)

- 55,000장 × 20,000원 = 금1,100,000,000원(금일십일억원)
- 15,000천원 × 15개소 = 금225,000,000원(금이억이천오백만원)

다. 재원조달 방안

- 일반회계(군비) 편성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도시과장 이정의
연락처	(033) 330 - 2470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 입	-	-	-	-	-	-
세 출	245,000	255,000	265,000	275,000	285,000	1,325,000
보조금(경상보조)	200,000	210,000	220,000	230,000	240,000	1,100,000
보조금(자본보조)	45,000	45,000	45,000	45,000	45,000	225,000
재원 조달	245,000	255,000	265,000	275,000	285,000	1,325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221,000	230,000	238,000	246,000	255,000 1,190,000
	지방세	221,000	230,000	238,000	246,000	255,000 1,19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24,000	25,000	27,000	29,000	30,000	135,000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민간자본						
해외자본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210mm×297mm [일반용지 0 60g/m² (재활용품)]